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3. 3. 22.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3년 3월 22일(수) 14:00~17:5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김　정　각　위　원

송　창　영　위　원

박　종　성　위　원

이　동　욱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3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3년도 제5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40호『**나틱시스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인가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1호『**크레디아그리콜 아시아증권 서울지점의 금융투자업 업무단위 추가등록 및 투자매매업 전부 폐지**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2호『**파빌리온자산운용㈜의 대주주 변경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3호『**㈜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에 대한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본 건 워런트는 부실화된 旣투자대상자산인 사모사채에 대한 사후관리업무로 취득한 것이 명백함. 본 사모사채는 EOD가 발생하여 3차례에 걸쳐 그 원본과 이자가 전액 상각됨.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가능한 최대한 많은 금액회수를 목표로 하였음. 선순위대주단으로부터 본

건 워런트를 수령하는 것을 투자대상자산에 대한 회수방안으로 확정함. 펀드가 투자집행 완료 및 회수업무 후 보존적 운용만을 하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투자행위를 전제로 하는 주된 투자대상자산의 변경이 있다고 보기도 어려움. 마지막에 평가가치 및 비중 측면에서도 본 건 워런트를 주된 투자대상자산으로 볼 수 없음. 워런트 발행 당시 회사의 재무현황과 해당 사업의 지난 경과를 고려할 때 향후 승계회사의 지분가치가 행사가격을 상회하게 될 가능성은 매우 낮고, 특히 워런트 발행 당시 기준으로 볼 때는 그 가능성이 사실상 없다고 볼 수 있음. 이에 본 건 워런트의 평가가치는 공정평가가치인 "0"으로 수렴되어 신탁재산명세부에도 반영됨. 본 건 펀드가 사실상 청산단계에 있음을 나타내는 표지라고 볼 수 있음. 본 건에서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은 워런트 취득에 대하여 투자자들에게 충분히 사전고지를 하였음. 투자자들의 예측가능성이 전혀 침해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관련법규 위반으로 제재된 기존의 사례들과 구분된다고 할 수 있음.

○ (위원) EOD 발생 가능성부터 자문사 선정 합의안, 그간의 수습경과를 투자자들한테 안내 하고 사전동의를 다 받은건지?

▶ (진술인) 안내와 동시에 코로나19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상회의를 수시로 열었고, 정말 중요할 때는 대면간담회도 개최했음. 투자자들한테 공문을 발송했으나, 다들 기관투자자여서, 그동안 별다른 의견이 없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나중에 투자자로부터 불만을 제기당할 위험(risk) 없이 진행할 수 있었음.

○ (위원) 두 번째 질문은 그 당시에 워런트 가치가 “0”이었는데 현금으로 수령하신 것 외에 “0”인 워런트를 확보하신 이유는 향후에 이것이 상승(upside)이 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한건지?

▶ (진술인) 후순위대출로 나갔고 구조적으로 완전히 후순위(subordinated) 됐기 때문에 저희가 건질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음. 외가격이 심한 신주인수권부를 저희한테 부여했다고 보면 됨.

○ (위원) 구조조정 합의가 있었던 것이 2021년 2월이었고 워런트를 취득한 것이 2021년 8월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면 그 기간 동안에 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실 수는 없었는지?

▶ (진술인) 이미 저희가 회수모드로 돌아갔기 때문에 유상의 대가를 투입하거나 저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운용해서, 변경이 필요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던 것이 맞음.

○ (위원) 그러면 워런트의 가치가 조금이라도 내가격으로 들어오기를 기대하며 펀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계획이었는지?

▶ (진술인) 네.

▷ *진술인이 퇴장함.*

- (보고자) 투자운용이라는 것은 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모든 것, 운용해서 자산을 취득하고, 회수하고, 부실화됐을 때 그것을 관리해서 회수가치를 높이고 회수가치를 높여서 나중에 청산함으로써 펀드투자자에게 많은 돈을 배분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행위를 운용이라고 할 수 있음.

○ (위원)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에는 피투자회사의 부실에 따라서 사모사채가 회수 불가능하게 되는 상황에서 투자자 이익을 위해서 어쨌든 회사가 최선의 조치를 다하는 과정에서 워런트를 취득한 것임. 그런데 이런 경우에도 과연 우리가 조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하는 의문이 좀 있음.

- (보고자) 현재 되고 있는 집합투자규약 변경이라는 것은 절차 위반에 관한 것임. 절차를 지키는 것이 집합투자산업의 안정성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봄.

○ (위원) 협상하는 과정에서 대체물을 받을 때 그때마다 투자자들을 다 불러서 규약 다 변경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프로세스인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함. 이 건(case)만큼은 새로운 투자라고 보기에는 좀 어려운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을 드림.

○ (위원) 구조조정 차원의 자산 변경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서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함.

○ (위원) 궁극적인 투자자가 그 중간에 있는 기관투자자가 아니라 기관투자자한테 자금을 공여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정확하게 어떤 실질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취지라면 저는 이 형식의 위반도 중요한 위반이라는 생각이 듦.

○ (위원) 집합투자규약을 '무엇과 관련된 주된 투자대상자산, 그리고 이와 관련된 제반 권리' 이렇게만 해 놓았어도 사실 문제는 없었는데, 동 건에 있어서 저는 과태료 부과하지 않는 것이 옳다고 생각됨.

(15시 05분 정회)
(15시 11분 속개)

○ (위원장) 사소한 집합투자규약 위반에 대해서 업계의 집합투자규약을 정교하게 다듬을 필요가 있다는 이런 당부나 지도공문을 발송을 해달라는 지적을 했었던 기억이 남. 본 건도 비슷한 취지로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최종적인 중지(衆志)를 모아주신 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음. 동 건의 경우 펀드의 주된 자산비중이 워런트이므로 집합투자규약의 위반이라고 판단됨. 자산운용사가 최선의 선관의무를 다했더라면 집합투자규약을 변경하고 워런트를 취득한 것이고 옳았다고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판단이 됨. 다만, 자산운용사가 수익자에게 사전에 고지하고 동의를 구한 점, 그리고 결과적으로 투자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 그리고 집합투자규약의 변경과정에서 자산운용사가 오인 내지 일종의 부주의가 있었

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본 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의결하도록 하겠음. 그리고 앞으로 집합투자규약 위반과 관련되어서 금융감독원에서는 집합투자규약이 이렇게 동 건처럼 어떤 주된 투자대상자산과 관련된 사후관리 아니면 이런 제반논리와 관련된 것들을 다 포괄할 수 있도록 집합투자규약을 수정하도록 업계에 당부나 권유를 해 주셨으면 좋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만장일치로 수정의결을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44호『㈜**우리은행에 대한 종합검사 및 수시검사 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은행검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첫 번째는 녹취의무 관련해서 '녹취파일에 잡음만 녹음되어 있거나' 하는 표현이 있음. 녹음을 했는데 녹음이 제대로 안 되었던 것임. 그리고 뒤에 양정내용을 보면 정상적으로 녹취를 하지 않았으므로 위반동기가 '상'임. 상식적으로 보면 녹취를 한 다음에 판매자는 녹취가 제대로 되었는지를 다시 한 번 들어봐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는 녹취가 끝난 다음에 다시 들어볼 수 있도록 시스템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이 판매

자가 다시 들어볼 수 있는 시스템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넘어간 사안이어서 저희가 위반동기를 '상'으로 하였음.

○ (위원) '상'은 사실 고의에 의한 경우인데 지금 여기 지적해 주신 내용을 보면 잡음만 녹음된 경우 또는 상품설명이 미흡한 경우라고 되어 있어서 이것을 전부 다 녹취를 아예 안 한 경우와 동일하게 '상'으로 볼 수 있는지?

○ (위원) 안건 내용에 '판매직원의 조작 미숙과 정상녹취록 점검의 부주의'라고 되어 있음. 모든 직원이 완벽할 수 없고 조작의 미숙이나 부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임. 그렇다면 과연 이 부분을 우리가 '상'으로 볼 수 있겠느냐는 얘기를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임.

- (보고자) 위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 조정을 해 주시면 그에 따라서 저희도 수정해서 보고를 다시 하겠음.

(15시 37분 정회)
(15시 38분 속개)

○ (위원장) 본 건과 관련해서 증선위 최종 의견을 말씀드리겠음. 다른 부분은 금감원 원안과 동일하고 녹취의무 위반과 관련하여 위반행위의 동기를 고의로 의제하여 '상'으로 보는 금감원 원안보다는 판매직원의 조작미숙과 정상 녹취 여부 점검 부주의에 '중과실'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므로 위반행위의 동기를 '중'으로 보아 녹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1억 5,000만 원이 아닌 1억 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수

정의결하도록 하겠음.

○ 수정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의결함**

□ 의결안건 제45호『㈜**씨티네트웍스 주식에 대한 시장질서 교란행위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조치예정자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의 ◉◉◉ 변호사임. 법률대리인 먼저 간략히 진술하고 조치예정자가 간략히 진술 하겠음. 조치예정자는 옵션거래 등 동시에 관리하고 있던 타 거래에 집중하기 위해 상대적으로 소액이 투자된 본 건의 경우 주문을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하고자 특별한 고민 없이 주문을 냈음. 다만, 본 건이 문제된 가장 큰 원인은 거래량이나 유통물량이 극히 적은 코넥스 시장 자체의 고유한 특수성 때문인 측면이 많다고 생각함. 본 건 혐의기간 총 8거래일 중 조치예정자는 단 5거래일만 거래를 하였고, 전체 주문횟수 역시 32회에 불과하며, 주로 100주 단위로 주문을 하였음. 더욱이 조치예정자는 통정, 가장, 허매수, 종가관여 등의 악성주문이 일체 없고, 차명계좌와 같은 추가적인 위법행위도 없었음. 한편 본 건 혐의기간 종료 후 첫 매도는 약 일주일 후, 본격적

인 매도는 한 달 넘게 지난 시점에서 시작하였음. 이러한 정황을 볼 때 조치예정자는 비록 본 건 혐의기간 중 소수의 고가매수 형태의 주문을 넣은 적은 있으나 이는 매매거래 자체가 어려운 코넥스 시장에서 5G 관련 종목의 상승세 등 시장상황을 보고 본 건 종목에 대한 신속한 물량확보를 위해 매수한 것에 불과한 것으로 이를 위법한 주문으로 해석하기는 무리가 있다고 생각함.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 제2항 제4호의 본문은 풍문 유포, 거짓으로 계책을 꾸밈 등을 그 행위유형으로 예시하고 있고, 금융위원회의 설명자료 역시 위반행위의 예로 초단기매매(스캘핑)를 통한 과다 시세 반영, 허수 주문, 통정·가장거래, 종가관여, 고빈도 알고리즘을 이용한 시세조종 행위, 시세조종 목적 없는 풍문 유포 등을 예시하고 있음. 즉, 본 건 규정의 입법 취지가 시세조종의 목적 없이도 악성을 띄는 주문을 처벌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점에서 아무런 악성주문 없이 단순히 고가매수를 하루에 단지 2회 내지 11회 정도인 본 건과는 그 행위양태에 커다란 차이가 존재하고 있음. 시장에서 단순 물량확보를 위해 고가매수 주문을 내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거래량이 매우 적은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로 이를 시장질서 교란행위로 의율하게 되면 호가 갭(gap)이 매우 큰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코넥스시장에서 거래참여자들은 대기매수 이외에는 적극적 주문을 전혀 할 수가 없게 되어 투자전략에 큰 장애를 갖게 됨. 만약 조치예정자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어야 한다고 하더라도 조치예정자의 본 건 이익금은 단순 매도단가와 매수단가를 계산하는 경우에도 2,400만원 남짓에 불과하다는 점, 일평균 위반횟수가 4.6회, 혐

의기간 중 총 매수금액은 4,000만 원, 주가변동률은 약 4.7%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위반행위의 중요도 측면에서도 매우 낮은 정도를 보이고 있음. 또한, 조치예정자가 이 건 위반사실에 대하여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의도치 않게 본 건 매매로 나아갔던 점과 금감원 조사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자료제출 및 성실히 답변하였다는 점도 고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또한, 본 건의 경우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악의적 매매형태가 일체 없다는 점, 동종 전과를 가지고 있지 않고 증권사의 수탁거부 조치를 포함하여 자본시장법 관련 어떠한 제재조치도 받은 사실이 없다는 점도 참작해 주시기를 부탁드림.

▶ (진술인) 본 건 관련하여 혐의기간 8일 중 제가 매매하지 않은 3일, 절반에 가까운 날에도 하한가나 그에 준하는 급락이 나왔으며 모두 급락 이후 20% 이상의 급격한 반등이 출현했고 심지어 상한가로 시세가 종료한 날도 있었음. 이는 코넥스시장의 특수성 때문이고 하락폭이 커도 매도호가 부족으로 매수자가 소액만 실매수하여도 시세가 급등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과 당시 변동성도 컸지만 급락하면 적극적 매수로 대응하려는 시장참여자가 있는 상황이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그리고 저는 단수주문, 허수주문, 통정매매 등의 악성매매도 전혀 않고 실매수만 했고 혐의기간 절반에 가까운 기간 동안 급락에도 거래하지 않았음. 과징금이라는 처분이 과연 본 사안에 적절한 것인지 재고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림.

○ (위원) 지적되고 있는 방식으로 매수한 주식은 그 이후로 상

당기간 보유했는지?

▶ (진술인) 본격적인 매도를 약 1개월 이후부터 시작했음.

○ (위원) 고가매수로 잡힌 것은 목표한 물량을 사는 과정에서 호가창에 나와 있는 주문이 없어서 목표한 물량을 사다 보니까 따라 올라간 것인지?

▶ (진술인) 맞음. 코넥스 시장의 경우 첫 거래가 2시 반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도 있음. 매도물량도 거의 없고 매수물량도 없는 상태에서 일단 누가 팔려고 하면, 우연히 하한가에 매수물량이 있으면 가격이 급격하게 하한가로 떨어지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 매도 1호가가 상당히 많은 호가 갭(gap)이 떠 있는 상태로 유지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음. 그런데 조치예정자는 그 당시 다른 수억원 상당의 옵션거래를 동시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빨리 처리하려면 이 건을 빨리 주문해야 된다는 생각에 5호가까지 하면 100주 물량이 나오면 그냥 사고 그 다음에 다른 거래로 넘어가는 형태의 매매를 취하게 되었던 것인데 그것이 이렇게 시장에 관여한 바가 크다는 이유로 시장질서 교란행위까지 문제될 줄은 꿈에도 몰랐던 상황임.

○ (위원) 물량도 그렇게 많지 않고 다른 주된 거래를 하는데 굳이 틈틈이 이 주식을 사신 이유는 무엇인지? 꼭 이 주식을 이때 사야 된다는 특별한 이유나 사정이 있는지?

▶ (진술인) 그 당시에 5G 종목이 굉장히 시장에 인기를 끌

었음. 5G 자체를 제가 좋게 보고 있었는데 그 관련 주를 찾다 보니 코넥스 시장에서 이 종목을 알게 되었고 다른 종목보다 매력적인 부분이 있어서 이 종목을 샀는데 문제는 거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종목이 급락할 때 제가 매수하게 되는 과정들이 좀 있었음. 그런데 전체 투자금에 비해서 아주 큰 금액도 아니었고 다른 종목들을 훨씬 더 많이 샀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음.

○ (위원) 5G 얘기를 하셨는데 어찌 되었든 그렇게 물량 확보한 주식을 1개월 만에 처분한 이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첫 번째로는 많이 올랐고, 두 번째로는 8월 이후부터는 공식적인 애널리스트 보고서에도 논란(noise)되고 있다는 것이 언급될 정도로 시장에서 왈가왈부가 굉장히 심해진 상황이었음. 그런 과정에서 '좀 조심을 해야 되나?' 하는 식으로 생각이 바뀌어서 매도를 시작하게 됐고, 매도도 제가 한 번에 다 판 것이 아니라 나눠가면서 팔았음.

○ (위원) 매도 시에도 유사한 방식으로 매도했는지?

▶ (진술인) 매도 시에도 항상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가격보다 저렴한 가격에 빠르게 거래가 체결되게끔 싼 가격에 매도한 경우가 종종 있었음.

○ (위원) 그런데 금감원이 파악한 자료에 의하면 혐의기간의 매수 양태와 그 이전의 매수 양태가 다른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 이유는 무엇인지?

▶ (진술인) 금감원에서 통계수치를 기초로 혐의기간과 그 전후로 나누어 매매양태가 바뀌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그런데 통계가 어느 정도 의미가 있으려면 일정 규모 이상의 숫자가 나와야 함. 숫자 자체가 적기 때문에 분모와 분자를 조금만 잘못해도 수치가 바뀌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 통계에 어느 정도 오류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 혐의기간 당시에는 5G 종목에 대한 조치예정자의 시각이 바뀐 측면도 있었다고 생각함.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코넥스의 경우에는 시장질서 교란도 매우 어렵지 않은지? 물론 매매양태라는 것을 보면 의심이 되는 양태이기는 한데 그로 인해서 시장질서 교란이 된다고 보면 대부분의 거래가 워낙에 호가가 없어서 그렇게 보일 듯 함. 한국거래소의 기본적인 기준(rule) 같은 것으로 잡힐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코넥스라는 시장을 얼마나 고려했는지가 궁금함.

- (보고자) 본 건의 경우 호가공백도 크고 거래량도 부진했기 때문에 분석의 기준도 훨씬 강화해서 판단함. 동시에 다른 투자자들이나 본인이 보여 왔던 매매양태와 비교분석을 했고, 그리고 각 개별 고가매수주문 하나하나를 추가적으로 분석해서 동 거래의 경우에는 주로 물량확보를 위해서 고가매수주문이 나왔다기보다는 충분한 물량을 확보한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호가 상승이 극대화될 수 있는 방식의 주문이 지속적으로 제출되었다는 점, 실질적으로 이 기간 중 장중

최고가와 종가 대부분이 위반자의 거래에 의해서 결정되었다는 점 등을 통해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위원) 위반행위에 고의가 인정된다는 부분과 관련해서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을지 의문이고, 자기는 물량확보 과정에서 반사적으로 한 행위가, 이러한 결과로 나온 것이 아닌가 볼 소지도 있음.

- (보고자) 매도가 1개월 후에 있었던 것은 그 이후에 주가가 다른 요소에 의해서 상승을 했기 때문에 매도 시점을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고, 과거 증권사에 근무를 했었기 때문에 시장상황 등을 다른 일반투자자보다는 잘 알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함.

(16시 20분 정회)
(16시 28분 속개)

○ (위원장) 동 건과 관련하여 증선위 위원님들의 논의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음. 제45호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겠음.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대해서 과징금 3,000만원으로 하겠음. 코넥스 종목과 같은 저유동성 종목에 대해서는 불공정거래 혐의 여부 때문에 향후 투자자들이 투자를 저어하는 일이 없도록 여타 고유동성 시장과 차별화하여 보고 접근하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6호『㈜**마이더스AI 주식에 대한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과 조사3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16시 31분 정회)
(16시 45분 속개)

□ 의결안건 제47호『㈜**인트로메딕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2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대여금 손상차손 과소계상에 대해서 감사인도 인정을 하고 있는지?

- (보고자) 감사인도 인정하고 있지만 감사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나름대로 여러 가지 절차를 준수하였으므로 저희들이 일단 '과실'로 판단한 부분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48호『**2020사업연도 등 회계법인 사업보고서 제출 의무 위반혐의에 대한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5호『**OOO OO O OOOO OO의 OOOO OOOO OO OOOO 보고**』를 상정하고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6호『**㈜셀트리온헬스케어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2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7호『**㈜셀트리온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2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 보고안건 제8호『**㈜셀트리온제약의 내부통제 개선권고 조치 관련 2차 이행실적 점검결과 보고**』를 일괄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각각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각각 원안접수함**

□ 보고안건 제9호 『OOOO회계연도 OOOO·OO OO 및 OOOO 보고』를 상정하고 금융감독원 회계감리1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202호(2022년) **『태흥공인회계사감사반 및 ㈜현담의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대한 위탁감리결과 보고 및 조치안』**을 재상정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10호 『OOOOOOOO의 OOOO회계연도 OOOO·OOOO 보고』를 상정하고 한국공인회계사회 심사감리본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49호『**증권선물위원회 비공개 안건의 비공개 기간 연장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의사운영정보팀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0호『**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혹시 전환사채에 대한 규제강화 이후에 상환전환우선주 발행이 좀 늘어났는지?

- (보고자) 전환사채는 2021년 12월에 증발공 규정을 개정해서 규제를 강화했고 그 이후에 상환전환우선주가 조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음. 그것을 지난해 9월에 보고 드렸고, 당시 증선위에서도 전환우선주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이번에 규정을 구체적으로 개정할 예정임.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의결안건 제51호『**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공시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을 상정하고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국문공시와 영문공시 내용에 상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본시장법 제도나 거래소의 제도들은 국문공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영문공시를 의무화시키기는 하지만 사실 자본시장법상의 법적인 의무는 국문공시를 기준으로 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3년도 제6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17시 53분 폐회)